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53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(제2호과목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)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제2호과목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다음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이 도래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그 위반행위에 해당할 때마다 적용한다.
- 다.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(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 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 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마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7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 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	
		1차	2차	3차	4차 이상

		위반	위반	위반	위반
가.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·명령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	법 제78조 제4항제1호				
1) 차량의 사용제한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			10		
2) 그 밖의 조정·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		150	200	250	300
나.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관리 투자계획과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78조 제4항제2호	150	200	250	300
다.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·보완하여 시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78조 제4항제3호	150	200	250	300
라.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78조 제2항제1호	500	700	900	1,000
마. 공공사업주관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78조 제4항제4호	150	200	250	300
바. 사업주관자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	법 제78조 제4항제5호	150	200	250	300
사. 사업주관자가 법 제12조	법 제78조	150	200	250	300

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또는 실태 파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제4항제6호				
아.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	법 제78조 제1항제1호	1,000	1,400	1,800	2,000
자.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광고를 한 경우	법 제78조 제3항	250	350	450	500
차.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78조 제4항제7호	150	200	250	300
카.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우	법 제78조 제4항제8호	150	200	250	300
타.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78조 제4항제9호	150	200	250	300
파.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78조 제1항제2호	1,000	2,000	2,000	2,000
하. 법 제34조에 따른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78조 제2항제2호	500	700	900	1,000
거.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	법 제78조		300		

<p>냉난방온도의 유지·관리 여부 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</p>	제4항제9호의2				
<p>너.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</p>	법 제78조 제4항제9호의3		300		
<p>더. 법 제39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</p>	법 제78조 제4항제9호의4	150	200	250	300
<p>러.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</p>	법 제78조 제4항제9호의4	150	200	250	300
<p>며. 법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게 사고의 일시· 내용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</p>	법 제78조 제1항제3호	1,000	1,400	1,800	2,000
<p>버.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 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</p>	법 제78조 제4항제10호		300		
<p>서.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</p>	법 제78조 제4항제11호	150	200	250	300
<p>어.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</p>	법 제78조 제2항제3호	500	700	900	1,000
<p>저.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</p>	법 제78조 제4항제12호	150	200	250	300